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u>증기</u>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u>증기</u>의 명칭 및 종류·취득년월일·등록번호·용도·취득가격·과세사실 발생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증기</u>를 취득한 때 2. <u>증기</u>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u>증기</u>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u>증기</u>가 과세<u>증기</u>로 된 때 5. 과세<u>증기</u>가 비과세<u>증기</u>로 된 때 	<p>제24조(<u>전설기계</u>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u>전설기계</u>의 명칭 및 종류·취득년월일·등록번호·용도·취득가격·과세사실 발생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설기계</u>를 취득한 때 2. <u>전설기계</u>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u>전설기계</u>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u>전설기계</u>가 과세<u>전설기계</u>로 된 때 5. 과세<u>전설기계</u>가 비과세<u>전설기계</u>로 된 때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4. 11.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2. 2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4. 2. 22.

다. 상정일자 : 제22회임시회 제1차위원회
(1994. 4. 11)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업과장 이영복)

가. 제출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자치구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하여 대

구민을 보호하는데 있음.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간사동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겸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전재)

- 1)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물가의 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 물가관련규정의 재개정·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한 동위원회의 설치

검토와 병행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물가 불안 요인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동반편승인상 및 특정품목의 매점매석 등 반경제적 행위의 단속 및 물가동향의 수시점검을 통한 대책마련 등 가정경제 안정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홍길표 위원) :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 위원 10인중 마포구의회 의원 1인, 관계전문가는 1인정도이며,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는 없는가?
- 답변(산업과장 이영복) :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위원회에서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관에서 가격을 결정하기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정성을 상실할 염려는 없다.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73
----------	-----

제출년월일 : 1994. 2. 2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자치구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하여 대구민을

보호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 가.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안, 제5조, 제6조)
- 라.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사항(안, 제8조)
- 마.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 바.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92. 9. 17. 대통령령 제13727호) 제42조
- 소비 13600-633호('93. 12. 10)지시공문

4. 조례(안) : 별 첨

5. 예산조치 필요성 : 위원회 수당등 예산 조치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마포구에 설치, 운영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마포구 물가안정

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마포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2. 도시가스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지방공사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5. 주차요금
6.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7.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마포구의회 의원1인(시민보건위원회 위원중1인), 생활체육과장, 재무과장, 위생과장, 산업과장, 지역교통과장,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 교수, 언론인등 관계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7인이 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전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 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4. 11.

시민보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4. 1.
마포구청장

2. 회부일자 : 1994. 4. 1.

3. 상정일자 : 제22회임시회 제1차위원회
(1994. 4.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업과장 이영목)

가. 제출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확대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기금출납명령관 변경 지정

나. 주요골자

○ 본 기금융자대상을 종전에는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던 것을 마포구 관할지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융자 범위 확대

○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종전의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가. 동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융자 대상을 종전 마포구소재 중소기업에만 해당되었던 것을 마포구 관할지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융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지방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시책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94년도 우리구 예산중 동기금의 편성액은 4억원으로 '93년도 예산액 6억원 대비 30% 이상 감소되었는 바, 향후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홍길표 위원) :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종전의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 답변(산업과장 이영목) : 많은 사고가 발생하므로 중요성 부각을 위해서 조